15.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(안)및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(안)입법예고

건설교통부공 제1999-169호 1999. 5. 18.

개 정 이 유

1999년 6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범위가 확대되어 25.7평이하 민영주택의 공급물량이 감소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25.7평이하 민영주택을 청약받는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자를 보호하고, 주택청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.

주 요 내 용

가. 25.7평이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자 보호를 위해

- 민간주택업체가 건설하는 18평초과 25.7평이하 국민주택에 대한 청약자격 및 청약절차를 개선함.
  - 민간 주택업체가 건설하는 18평초과 25.7평이하 국민주택은 청약저축, 25.7평이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, 청약부금 가입자 모두에게 청약을 허용함.
  - 민간주택업체가 건설하는 18평초과 25.7평이하 국민주택은 청약통장의 종류에 관계없이 순위별로 추첨하여 당첨자를 허용함.
  - 민간주택업체가 건설하는 18평초과 25.7평이하 국민주택은 청약통장의 종류에 관계없이 순위별로 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함.

나. 주택청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

- 민영주택의 분양가격이 자율화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의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실시하던 채권입찰제를 폐지함.

주택회보